

# 임시 이사회 회의록

- 개최일시 : 2014년 11월 27일(목) 09:00-11:00
- 개최장소 : 이랜드빌딩 회의실
- 총이사수 : 7명
- 출석이사 : 4명(이경준 이사, 이태웅 이사, 박영희 이사, 박성남 이사)

이경준 이사장은 정관 규정에 따라 의장석에 등단하고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이사가 출석하였으므로 이사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의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 <제 1호 의안> 2015년 법인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

- ▶ 이경준 이사장은 본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정영일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2015년 사업 및 예산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게 하다.
- ▶ 정영일 사무국장은 2014년도 기부금수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예산을 수립하였으며, 기부금 수입이 확정되면 본예산을 수립하게 됨을 설명하고, 사업계획과 예산서 수립배경을 설명한 후 2015년 사업계획 및 2015년 준예산 세입, 세출 각 6,280,742천원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다.
- ▶ 이경준 이사장은 2015년도 법인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지를 이사들에게 묻다.
- ▶ 이태웅 이사는 2015년 사업 계획 중 위기가정지원사업이 추가로 진행됨에 따라 대상자의 욕구를 잘 파악하고 재단이 사각지대의 어려운 위기상황의 가정들을 잘 발굴하여 꼭 필요에 맞는 도움과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며 격려하다.
- ▶ 박영희 이사는 2015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2014년을 잘 평가하여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하고, 잘하는 점은 더욱 강화하여 사용하는 비용에 대비하여 수혜자가 최고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다.
- ▶ 박성남 이사가 재청하다.
- ▶ 이경준 이사장이 본 건을 표결에 부치니 참석이사 전원이 만장일치로 승인가결하다.

이에 이경준 이사장은 본 건 '2015년 법인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의 건을 승인하게 됨을 선포하고, 결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진행과 결과를 사무국에 위임하다.

## <제 2호 의안> 2014년 법인 예산전용(안) 심의

- ▶ 이경준 이사장은 이사회에 2014년 이랜드재단 법인 예산전용(안)을 제출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정영일 사무국장에게 설명하도록 하다.
- ▶ 정영일 사무국장은 2014년도 이랜드재단을 운영하면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하여 관간, 목간 예산전용(안)

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였다고 설명하다.

- 아 래 -

(단위: 천원)

구분	관	항	목	2014 예산액	전용액	예산현액	전용 사유
관간	보조금수입	후원금수입	지정후원금수입	30,000	△30,000	0	후원금 수입 감소
		재산수입	이자수입	51,500	30,000	81,500	정기예금 증가로 인한 이자수입 증가
목간	사무비	인건비	퇴직적립금	7,076	600	7,676	인원변동으로 인한 퇴직급여 증가
			사회보험부담금	4,676	△600	4,076	인원변동으로 인한 사회보험료 변동
목간	사무비	운영비	수용비및수수료	6,340	△4,200	2,140	비용 감소
			공공요금	8,660	2,000	10,660	관리비 증가
			제세공과금	5,210	2,200	7,410	회계(검사,신고)관련 수수료 증가

▶ 이경준 이사장은 정영일 사무국장의 설명을 토대로 2014년 이랜드재단 법인 예산전용(안)에 대해서 이사들의 의견개진과 심의를 구하다.

▶ 박성남 이사는 제출한 2014년 이랜드재단 법인 예산전용(안)에 대하여 타당한 사유가 있는 바, 법인 예산전용(안) 승인에 동의함을 표하다.

▶ 박영희 이사가 동의 재청하다.

▶ 이경준 이사장은 본 건을 표결에 부치니 참석이사 전원이 만장일치로 승인가결하다.

이에 이경준 이사장은 본 건 '2014년 법인 예산전용(안) 심의 건'이 결의되었음을 선포하고, 결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진행과 결과를 사무국에 위임하다.

### <제 3호 의안> 기본재산편입예외 사후 승인의 건

▶ 이경준 이사장은 이사회에 기본재산편입예외 사후 승인(안)을 이사회에 제출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정영일 사무국장에게 설명하도록 하다.

▶ 정영일 사무국장은 공익법인설립및운영에관한시행령 제16조제1항 '공익법인의 재산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2012년, 2013년도 법인기부금 사용계획에 대해 주무관청의 기본재산편입예외 사후 승인이 필요함을 설명하다.

- 아 래 -

<2012년>

(단위: 원)

사용내역	지급시기	지급액	내역
고등학생장학금	분기별	180,000,000	청소년 역량강화프로그램
대학생장학금	분기별	33,000,000	비전장학금, 동문 장학금
의료봉사사업	월별	30,000,000	이랜드노인복지관 어르신건강검진
학교지원사업	반기	12,000,000	
청소년역량강화 프로그램지원	수시	1,000,000	
이월금	회계년도말	544,050,000	2014년 상반기 예산
합 계		800,050,000	

<2013년>

(단위: 원)

사용내역	지급시기	지급액	내역
고등학생장학금	분기별	194,000,000	청소년 역량강화프로그램
대학생장학금	분기별	46,000,000	비전장학금, 동문 장학금
학교지원사업	월별	12,000,000	
건강검진사업	반기	24,399,000	이랜드노인복지관 어르신건강검진
이월금	회계년도말	53,601,000	2015년 상반기 예산
합 계		330,000,000	

- ▶ 박영희 이사는 기본재산편입예외 사후승인(안)에 동의함을 표하다.
- ▶ 이태응 이사가 재청하다.
- ▶ 이경준 이사장이 본 건을 표결에 부치니 참석이사 전원이 만장일치로 승인가결하다.

이에 이경준 이사장은 본 건 '기본재산편입예외 사후 승인(안)의 건'을 승인하게 됨을 선포하고, 결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진행과 결과를 사무국에 위임하다.

이경준 이사장은 본 이사회의 안건이 적합하게 결의되었음을 알리고, 결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결과는 사무국에 위임하고 폐회를 선언하다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다.

폐회시각은 11시 00분

이 년 11 일

배변의 수칙

시상 영주



사 태웅



사 영희



사 성남

